

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94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2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건강 증진 및 노인공경 분위기를 조성하고
- 경로식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에게 경로식당 업무를 위탁운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. 위탁사무명 :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 운영

2. 위탁운영 사업내용

- 안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기초 생활 수급 노인에게 점심 식사 제공 사업
- 독거 노인 또는 저소득 가정 노인에게 식사, 밀반찬 배달 서비스사업
-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
(이.미용 서비스, 상담서비스, 레크리에이션)

□ 관계법규

-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(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)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(계약의 체결)
-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

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
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.

1. 위탁 사무명 : 안산시선부동경로식당 운영

2. 위탁운영 사업내용

- 안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점심식사 제공 사업
- 독거노인 또는 저소득 가정 노인에게 식사, 밑반찬 배달 서비스 사업
-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
(이.미용 서비스, 상담서비스, 레크리에이션)

관 계 법 규 발 췌

□ 노인복지법 제4조 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. 검사. 검정.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.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.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
□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

(민간위탁의 기준)

-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. 검사. 검정.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.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

(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)

-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

(계약의 체결 등)

-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 기관의 의무,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□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, 검사,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 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

-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경기도자치위임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【 참고사항】

안산시 선부동 경로식당 현황

- 위치 : 안산시 선부1동 1077-6번지(대준빌딩 401호)
- 시설규모
 - 식당홀 : 165㎡(50평)
 - 주방 : 66㎡(20평)
- 주요사업 내역
 - 무료급식
 - 이용일시 : 매주 월~금 (주5일) 12:00~13:00
 - 급식인원 : 일일 120명선
 - 대상
 - 안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기초 생활수급 노인.
 - 독거 노인 또는 저소득가정 노인에게 식사, 밀반찬 배달서비스 제공
 -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(이·미용, 상담, 레크리에이션 등)
- 위탁사업비 보조 : 경로식당의 운영보조금 이외는 보조금 보조 없음
- 위탁방법 :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
- 관계법규
 -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 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 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 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(민간위탁대상기관의선정 기준)
 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의2(계약의 체결)
 -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